

코로나19 관련 칭다오총영사관 종합 안내 (2.24)

2020.2.24.(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누적현황 및 산둥성, 허난성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관련 동향을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산 현황]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24(월) 12:00 기준 중국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49,909 명(누적 확진자 77,262명, 사망 2,595명, 완치 24,758명, 의심환자 3,434명)이며, 그 중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산둥성 및 허난성 내 코로나19 확산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둥성 내 확진자 426명(누적 확진자 755명), 의심환자 17명
- 허난성 내 확진자 322명(누적 확진자 1,271명)
- 상세 사항은 별첨1 참조

* 참고로 아래 사이트주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3g.dxy.cn/newh5/view/pneumonia?scene>)

2. 우리총영사관 민원업무 안내

- 당관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교민지원(민원실), 긴급사증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원실 출입시 민원실 소독,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중입니다.

- 방문객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민원실 입장 시 발열체크 결과 37.5도 이상인 분들께서는 민원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유증상 발견시 대처 및 감염병 예방방법은 별첨2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비상연락처 안내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09시-18시) +86-10-8532-0404, (18시-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 (주간 09시-17시 30분) +86-532-8897-6001

- (야간 17시 30분- 익일 09시) +86-186-6026-5087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3. 주요 공지 사항

- 산둥성,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인원 자가격리 강화조치 실시
 -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국적불문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중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을 경우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 자가격리 해제 등 편의를 봐주었으나,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2.23(일)부로 자가격리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각 지역 방역본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지침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칭다오시 쇼핑몰 영업시간 회복 및 정저우 쇼핑몰 영업 정상화
 - 코로나19 발생 후 단축 운영(10:00-18:00) 중이었던 칭다오시 각급 쇼핑몰의 영업시간이 2.22부터 차츰 정상 영업시간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 중(쇼핑몰내 마트 영업시간은 20:00 이후까지 회복 중)
 - 정저우시 쇼핑몰도 2.17부터 영업 재개 중(영업시간 단축 운영)
 - * 상세 영업시간은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참조

- 아파트 경비실(物业) 또는 호텔의 입주 거부 관련 안내 등
 - 한국에서 돌아온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또는 호텔로부터 입주 거부를 당할 경우에는 각 지역 방역본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지침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칭다오시 청양구,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일부 지역의 경우 인적사항 등을 등록한 후 통행증 발부 / 여타 지역에서는 지역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최대 14일간의 자가 격리 실시)
 - 각 거주지 관리사무소(물업공사), 및 아래 산둥성 외사판공실 24시간 핫라인에 연락하여 최대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산둥성 외사판공실, 24시간 외국인을 위한 핫라인 개설, 운영
 - 산둥성외사판공실은 2.1(토) 산둥성내 외국인에게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담 및 구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둥성내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상담·구조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칭다오시의 경우 다국어 상담전화(별첨4 참조)를 개통하고 24시간 심리상담 지원 핫라인(0532-8566-9120, 별첨5 참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기관 | 연락처 |
|-----|---------------|------|--------------------------------|------|---------------|
| 산둥성 | 185-5316-8785 | 옌타이시 | 0535-678-1999 | 랴오칭시 | 151-0689-1919 |
| 지난시 | 139-5316-1246 | 웨이팡시 | 137-9260-1737 0536-809-0400 | 허쩌시 | 188-6505-9709 |

| | | | | | |
|------|--------------------------------|-------|--------------------------------|------|---|
| 칭다오시 | 150-6423-8173 | 지닝시 | 0537-234-8804 136-0537-3601 | 빈저우시 | 180-5432-6098 |
| 쯔보시 | 0533-277-1124 | 타이안시 | 0538-699-5589 175-5386-6778 | 린이시 | 151-9298-6760 |
| 짜오좡시 | 135-6119-1619 | 웨이하이시 | 0631-522-1337 (영어·한국어·일어) | 더저우시 | 0534-268-6961 188-0534-0027 150-6920-0638 |
| 둥잉시 | 0546-833-1015 189-5460-5787 | 르자오시 | 0633-878-1301 135-0633-7669 | | |

□ 한국 입국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 안내문 관련)

-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하여 한국 입국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국 제한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또는 거주“한 경우의 입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에도 입국이 금지되지 않지만, 국내 연락처와 거주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가능함.
 - 입국 후에는 14일간 입국 시 신고한 거주지에서 외출 제한 등 자가격리를 하며 관련 기관에서 증상관찰이 진행되며,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이 없다면 14일 이후에 자가격리가 해제됨.
 - ※ 우리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 외 모든 승객의 한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 2.12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인천공항 등 한국 내 공항에 설치된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http://ncov.mohw.go.kr/selfcheck/> 접속하여 자가진단앱을 설치, 등록하셔야 합니다.(별도 공지사항 참조)
- “중국 본토 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 또는 거주“한 경우의 입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민이 국내 입국 시 국내 연락처와 거주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입국절차가 신설됩니다.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각국의 제한 조치(2.16기준) 안내

- 2.16 기준 중국이민국이 발표한 각 국의 제한조치를 별첨<6>과 같이 안내합니다.

□ 칭다오시 택배 배송업무 재개(2.11)

- 유정(郵政), 순평(順豐), 징둥(京東), 중통(中通), 선통(申通), 위안통(圓通), 윈다(韻達), 더방(德邦) 등 칭다오시 소재 택배 배송 회사가 2.11(화)부터 업무를 재개함.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무접촉 배송, △택배기사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의무화 실시

4. 우한 한국관 근무자 (방문자) 파악

- 2.2(일) 질병관리본부(정은영 본부장)는 우한 한국관(더 플레이스) 근무자가 확진자로 확인함에 따라 우한 한국관에 근무한 아국인들의 현황파악 및 신고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동 한국관 근무 또는 방문자가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근 동 한국관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당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람.

5. 교통 상황 (붙임문서 참조)

□ 산둥성

- (고속도로) 산둥성, 2.1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노망)
 - 산둥성 교통운수청은 조업재개로 인해 물류운수차량의 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업무 종료 시까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차량의 성 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교량 및 터널 포함)를 면제
 - * 단, 적재량 초과 차량이나 규정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 면제를 예외로 하고, 장거리 여객버스는 2-5시까지 통행금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
 - 산둥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했던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2.21. 18:00 이후 모든 톨게이트 전면 개방(인민일보)
 - 2.24일부터 청양취(城阳区), 짜오저우(胶州市), 평뚜시(平度市)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한 31개 검역소를 철수하였으며, 시급 일반국도 및 성급 도로에 설치한 27개 검역소 또한 철수함(청도신문망)
- 현재 산둥성내 모든 공항을 통해 정상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 및 체온검사 진행으로 승객 중 발열(37.3도 이상), 기침 등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항) 1.26(일) 오전부터 검역당국 지시로 인해 모든 출입국 승객에 대해 건강신고서(검역신고서) 작성토록 항공사에 지시하였으며, 현재 입국 승객 모두 개별체온 검사하여 다소 입국 심사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출국심사 시간도 다소 지연중이나 현재까지 출국시간 2시간 전에만 도착하면 탑승에 지장은 없음.
 - 각 항공사별 미운항, 감편 운항 정보는 **별첨3**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항만) 엔타이, 웨이하이, 칭다오 지역 한-중 카페리 선사에 문의한 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산둥성 관내 한중카페리는 2월초까지 자체 운항 중단하고 그 이후에도 화물만 취급하고 여객업무는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산둥성 내 선사들 모두 여객 업무는 우한 폐렴 상황을 지켜보며 재개 결정예정

- * 청도 위동항운 : 2.5부터 여객업무 잠정 중단, 운항 시작일 추후 공지 예정
- * 위해 위동항운 : 2.5부터 여객업무 잠정 중단, 운항 시작일 추후 공지 예정
- * 영성 화동명주 : 2.5부터 여객업무 잠정 중단, 운항 시작일 추후 공지 예정
- * 석도 국제훼리 : 2.3부터 여객업무 잠정 중단, 운항 시작일 추후 공지 예정
- * 연대 한중페리 : 2.23부터 여객업무 잠정 중단, 운항 시작일 추후 공지 예정

- (시내버스) 지난시 시내버스 버스 기사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배차 간격 단축
- (지하철) 칭다오시 지하철 정상 운행,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 (철도) 코로나19 방역 업무 강화로 2.1부터 기차표 구매시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야 함. 미성년자 또는 노약자 등은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이메일 주소를 제공,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일부 열차 운행 중단

□ 허난성

- (고속도로) 2.21부터 성 전체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통제 해제
 - * △2급 지역(신양, 정저우, 난양 이외 지급시 및 지위안시범구)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 및 휴게소, 일반간선도로, 현 및 마을 도로의 방역검사소 철거(성질병역지휘부 허가시 보류 가능), 농촌도로의 격리시설 철거, △1급 지역(신양, 정저우, 난양)은 지휘부 허가 취득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 및 일반 간선도로에 임시 방역검사소 설치 가능
- (시내버스) 정저우시는 1.27부터 정저우시를 출입하는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운행을 중단하며,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운행 횟수를 줄이고 대중교통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지하철) 정저우시 지하철 14호선 1.28부터 운행 중단
- (철도) 코로나19 방역 업무 강화로 2.1부터 기차표 구매시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야 함. 미성년자 또는 노약자 등은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고, 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이메일 주소를 제공, 허난성에서 출발하는 일부 열차 운행 중단

6. 허난성 코로나19 관련 동향

- 허난성 각급 학교 3.1부터 순차적 개학
 - 각급 학교는 허난성 교육청 질병관리업무전담반의 허가를 받은 후 3.1부터 순차적으로 개학
 -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우선적으로 등교 가능, 유치원은 개원 시기 연기 가능
- 정저우시 대형 상점 정상영업 실시

- 정저우시 소재 일부 대형 상점이 2.17자로 정상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영업시간은 단축 운영
- 허난성은 기업 근무 재개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와 대중교통, 마트 출입시 개인별 건강상태를 등록하도록 조치 **(개인별 건강상태 등록제도 시행, 2.19)**
 - (거주지) △외지에서 온 사람은 허난성 도착 당일 24시까지 거주지 주민위원회에 도착 신고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건강상태 등록, △기업 근로자는 기업 근로자 등록 시스템에 건강상태 등록
 - (대중교통 및 마트) △탑승차량, 탑승역, 해당 상가 및 마트 입구에 있는 '정저우시 주민건강등록 QR코드'를 스캔하여 개인별 건강정보 입력하고 관계자에게 제시 후 탑승 및 출입 가능
- 정저우 교통그룹은 기업 근무 재개와 개학에 대비하여 허난성내 근로자 및 학생들의 수송을 위한 차량을 배차하기로 결정
 - 각급 기업과 학교는 '豫州行'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에 차량 배정을 신청하면 교통그룹에서 전용 차량 배차
- 허난성 이외 지역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농민공) 및 허난성 이외 도시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송을 위해 정저우 철도그룹에서 전용 열차 배정
 - 향저우로 복귀하는 허난성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차량이 2.17 출발
 - 감염에 대비하여 소독과 통풍 철저, 체온측정 등 검사지점 추가 설치, 근로자 전용 통로 및 대기실 설치, 열차내 탑승자간 분산 착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차량내 이동회수 제한 등 조치 실시
- 허난성 공안청 고속도로 교통경찰총대는 외지 차량(후베이성 제외)에 대해서도 허난성 차량과 마찬가지로 탑승자 등록 및 체온 검사를 거치면 정저우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 단, 탑승자 중 후베이성 주민(호적자)은 진입 불가, 농민공 운송차량은 관련 증명서 제출 후 진입 가능
- 정저우시는 2.19(수)자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구매 예약하고 일인당 구매매수를 제한한다고 발표
 - 일인당 한 번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 매수는 5개로 제한(약국별 일일 마스크 판매량 500매로 제한)
 -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일 14:00부터 정저우시 공식 웨이신(鄭州發布)에 접속하여 왼쪽 하단 '마스크 예약'을 누르고 구매 신청 후 수령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9:00-18:00간 지정된 약국에 가서 수령
 - 가족의 경우 한 명이 대표로 본인의 신분증과 다른 가족들의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지정된 약국에서 수령
 - 한번 구매한 자는 3일 내 중복 예약 불가, 예약 실패시 다음 날 정해진 시간에 예약 가능

□ 건강신고증명 발급 업무 지침 발표(2.20)

- 허난성 질병통제지휘부는 △허난성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한 자, △허난성 내 타 지역(현급 이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전용 수송수단으로 일괄 복귀한 근로자는 거주지 관계기관에서 ‘코로나19 건강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 증명서를 제시하면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동 증명서는 2.21부터 인터넷과 위챗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청자에게 건강검사 장소와 시간을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핸드폰으로 코로나19건강증명신고(新冠肺炎健康证明申报)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위챗 ‘허난성위생건강위원회(河南省卫生健康委)’ 공식 계정에서 서비스검색(服务查询)-건강증명(健康证明)을 클릭하여 신청
-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체온검사,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체질과 병력 등을 문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신고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1> 2020.2.24. 12:00 기준

| 산둥성 | | | | | |
|----------|--------|--------|--------|------|------------|
| 도 시 | 추가 확진자 | 누적 확진자 | 현재 확진자 | 의심환자 | 비 고 |
| 지닝(济宁) | | 257 | 226 | 9 | 완치 31 |
| 칭다오(青岛) | 1 | 60 | 23 | 2 | 사망1/완치36 |
| 린이(临沂) | | 49 | 5 | | 완치 44 |
| 지난(济南) | | 47 | 23 | 3 | 완치 24 |
| 옌타이(烟台) | | 47 | 28 | | 완치 19 |
| 웨이팡(潍坊) | | 44 | 22 | 2 | 완치 22 |
| 웨이하이(威海) | | 38 | 16 | | 완치 22 |
| 랴오청(聊城) | | 38 | 14 | | 완치 24 |
| 더저우(德州) | | 37 | 23 | | 사망2/완치12 |
| 타이안(泰安) | | 35 | 13 | | 사망1/완치21 |
| 쯔보(淄博) | | 30 | 16 | 1 | 완치 14 |
| 짜오좡(枣庄) | | 24 | 6 | | 완치 18 |
| 허쩌(菏泽) | | 18 | 2 | | 완치 16 |
| 르자오(日照) | | 16 | 5 | | 완치 11 |
| 빈저우(滨州) | | 15 | 4 | | 완치 11 |
| 합 계 | 1 | 755 | 426 | 17 | 사망4/ 완치325 |

| 허난성 | | | | | |
|----------|--------|--------|--------|------|-----------|
| 도 시 | 추가 확진자 | 누적 확진자 | 현재 확진자 | 의심환자 | 비 고 |
| 신양(信阳) | | 274 | 101 | | 사망2/완치171 |
| 정저우(郑州) | | 157 | 59 | | 완치 98 |
| 난양(南阳) | | 155 | 39 | | 사망2/완치114 |
| 주마덴(驻马店) | | 139 | 23 | | 완치 116 |
| 상치우(商丘) | | 91 | 19 | | 사망3/완치69 |
| 저우커우(周口) | | 76 | 27 | | 완치 49 |
| 핑딩산(平顶山) | | 58 | 15 | | 사망1/완치42 |
| 신상(新乡) | | 57 | 8 | | 사망3/완치46 |
| 안양(安阳) | | 53 | 16 | | 완치 37 |
| 취창(许昌) | | 39 | 13 | | 완치 26 |
| 뤄허(漯河) | | 35 | 13 | | 완치 22 |
| 자우궈(焦作) | | 32 | 14 | | 사망1/완치17 |
| 뤄양(洛阳) | | 31 | 12 | | 사망1/완치18 |

| | | | | | |
|----------|--|------|------|--|------------|
| 카이펑(开封) | | 26 | 10 | | 완치 16 |
| 허비(鹤壁) | | 19 | 8 | | 완치 11 |
| 푸양(濮阳) | | 17 | 10 | | 완치 7 |
| 싼먼샤(三门峡) | | 7 | 1 | | 완치 6 |
| 지웬(济源) | | 5 | 2 | | 완치 3 |
| 지역불명 | | | (68) | | 사망6/완치62 |
| 합 계 | | 1271 | 322 | | 사망19/완치930 |

* 허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역별 의심환자를 별도 공개하지 않음.

<별첨 2> 유증상 발견시 대처 및 감염병 예방방법

□ 유증상 발견시 대처 요령

- 우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하여 의심증상(△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인근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거나 우리 총영사관 (186-6026-5087 또는 0532-8897-6001)이나 한국 질병관리본부(+82-2-2633-1339)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및 영사관 문의시
 - 주요 의심 증상(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발열 37.5도 이상 등)
 -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여부
 - 기본정보(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호됨)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둥성 병원리스트 관련
 - 국제부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은 칭다오시 동부시립병원(시남구) 및 청양인민병원(청양구)입니다.
 - 칭다오시 동부시립병원(시남구) 국제클리닉 연락처 : 0532-8593-7678 / 0532-8593-7690, 근무시간: 08시-17시(월요일-토요일) 그 이외 시간은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양인민병원 국제부 콜센터 연락처 : 0532-5800-0256, 근무시간: 08시-12시, 13시-16시30분(평일근무, 1.28(화)부터 근무시작)
 - 칭다오시립병원 같은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국제부가 아닌 우선 시립병원 북문으로 진입 후 오른쪽 발열클리닉(fever clinics, 發熱問診)으로 기재된 곳으로 먼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기타 병원에서도 발열증 증세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발열클리닉이 상시 설치되어 있어 바로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잠복기는 14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의심환자로 분류시 중국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으므로 평소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방법

- 중국에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안전수칙을 참고하시어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하는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인근 지정병원(첨부 1-4)의 발열클리닉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단 결과 확진 및 의심 등 판정시에는 지체 없이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3> 코로나19 관련 항공사 감편(비운항) 안내

| 항공사명 | 항공편 | 출발시간/도착시간 | 출발지/도착지 | 감편(비운항)기간 |
|------|--------|-------------|---------|---|
| 대한항공 | KE839 | 13:35/13:55 | 인천/웨이하이 | 20.2.11-3.28 |
| | KE840 | 15:10/17:25 | 웨이하이/인천 | |
| | KE845 | 09:05/09:45 | 인천/칭다오 | 20.2.2-3.28 |
| | KE846 | 10:55/13:25 | 칭다오/인천 | |
| | KE889 | 10:45/11:55 | 부산/칭다오 | 20.2.2-3.28 |
| | KE890 | 13:05/16:00 | 칭다오/부산 | |
| | KE809 | - | 인천/정저우 | 20.2/8,11-4.25 |
| | KE810 | - | 정저우/인천 | |
| 아시아나 | OZ307 | 14:20/14:40 | 인천/옌타이 | 20.2/6,8,11,13,19,21 |
| | OZ308 | 15:40/17:55 | 옌타이/인천 | |
| | OZ309 | 09:00/09:15 | 인천/웨이하이 | 20.2/13,19,21,24,26-28 |
| | OZ310 | 10:25/12:30 | 웨이하이/인천 | |
| | OZ317 | 09:00/09:30 | 인천/칭다오 | 20.2/14,17~19,21,23,24,26,28 |
| | OZ318 | 10:35/12:55 | 칭다오/인천 | |
| | OZ319 | 14:15/14:45 | 인천/칭다오 | 20.2.3-3.28 |
| | OZ320 | 15:45/18:10 | 칭다오/인천 | |
| 제주항공 | 7C8401 | 08:20/08:50 | 인천/칭다오 | 20.2.12-3.28 |
| | 7C8402 | 09:50/12:20 | 칭다오/인천 | |
| | 7C8403 | 20:15/20:50 | 인천/칭다오 | 20.2.11-3.28 |
| | 7C8404 | 21:50/00:20 | 칭다오/인천 | |
| | 7C8703 | 13:30/14:10 | 인천/옌타이 | 20.2/8,9,11,13,15,16,18,20,22,23,25,27,29 |
| | 7C8704 | 15:50/18:35 | 옌타이/인천 | |
| | 7C8701 | 10:10/10:50 | 인천/옌타이 | 20.2.6-2.29 |

| 항공사명 | 항공편 | 출발시간/도착시간 | 출발지/도착지 | 감편(비운항)기간 |
|-------|--------|-------------|---------|-----------------------------|
| 제주항공 | | | | |
| | 7C8702 | 11:50/14:40 | 옌타이/인천 | |
| | 7C8501 | 10:30/10:50 | 인천/웨이하이 | 20.3/3,5,7,10,12,14 (3월) |
| | 7C8502 | 11:50/14:00 | 웨이하이/인천 | |
| | 7C8503 | 15:25/15:50 | 인천/웨이하이 | 20.2.10-3.28 |
| | 7C8504 | 16:50/19:00 | 웨이하이/인천 | |
| 티웨이항공 | TW607 | 07:10/07:45 | 인천/칭다오 | 20.2.4-3.28 |
| | TW608 | 08:45/11:15 | 칭다오/인천 | |
| 부산항공 | BX321 | 10:30/11:35 | 인천/칭다오 | 20.2.26-3.28 |
| | BX322 | 12:35/15:35 | 칭다오/인천 | |
| 청도항공 | QW9901 | 20:20/22:20 | 칭다오/인천 | 20.2.4-3.28 |
| | QW9902 | 23:20/23:55 | 인천/칭다오 | |
| 산동항공 | SC4617 | 09:00/11:15 | 칭다오/인천 | 20.2.2-3.28 |
| | SC4618 | 12:15/13:00 | 인천/칭다오 | |
| | SC4081 | 12:15/14:30 | 칭다오/인천 | |
| | SC4082 | 15:30/16:10 | 인천/칭다오 | |
| | SC4721 | 13:25/15:45 | 칭다오/인천 | |
| | SC4722 | 16:45/17:15 | 인천/칭다오 | |
| | SC4719 | 18:30/20:45 | 칭다오/인천 | |
| | SC4720 | 08:45/09:15 | 인천/칭다오 | |
| | SC8071 | 20:20/22:45 | 칭다오/인천 | |
| | SC8072 | 23:45/00:25 | 인천/칭다오 | |
| 동방항공 | MU2039 | 08:20/11:00 | 칭다오/인천 | 20.2.12-3.28 |
| | MU2040 | 11:55/12:50 | 인천/칭다오 | |

| 항공사명 | 항공편 | 출발시간/도착시간 | 출발지/도착지 | 감편(비운항)기간 |
|------|--------|-------------|---------|----------------------------------|
| 동방항공 | MU2033 | 09:25/12:10 | 칭다오/인천 | 20.3.4-3.28 |
| | MU2034 | 13:10/13:50 | 인천/칭다오 | |
| | MU5021 | 10:35/13:15 | 칭다오/인천 | 20.2.12-3.28 |
| | MU5022 | 14:15/15:00 | 인천/칭다오 | |
| | MU2043 | 18:00/20:40 | 칭다오/인천 | 20.2.12-3.28 |
| | MU2044 | 08:30/08:35 | 인천/칭다오 | |
| | MU2017 | 11:00/13:00 | 웨이하이/인천 | 20.2/13,15,17,19,21, 23,25,27 |
| | MU2018 | 14:00/14:40 | 인천/웨이하이 | |
| | MU2075 | 11:30/13:40 | 웨이하이/대구 | 20.2.5-3.28 |
| | MU2076 | 14:40/14:50 | 대구/웨이하이 | |
| | MU2083 | 11:30/13:30 | 웨이하이/청주 | 20.2.5-3.28 |
| | MU2084 | 14:25/14:35 | 청주/웨이하이 | |

* 상황에 따라 추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께서는 이동 계획 전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항공편의 운행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항공 “중국 노선 감편/비운항 안내(2/3기준)”

해당 노선 이용 예정이셨던 고객께서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또는 예약을 진행하신 여행사를 통하여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선 | 편명 | 기간 | 비고 | |
|-------------|-----------|----------------------------|--------|------------------------------|
| 인천 - 우한 | KE881/882 | '20.1/24일 ~ 3/28일 | 비운항/감편 | |
| 인천 - 황산 | KE817/818 | '20.2/2일 ~ 3/28일 | | |
| 인천 - 장자제 | KE163/164 | | | |
| 인천 - 창사 | KE819/820 | | | |
| 인천 - 쿤밍 | KE885/886 | | | |
| 인천 - 칭다오 | KE845/846 | | | |
| 부산 - 난징 | KE153/154 | | | |
| 부산 - 베이징 | KE849/850 | | | |
| 제주 - 베이징 | KE879/880 | | | '20.2/2일 ~ 3/28일 |
| | KE877/878 | '20.2/11일 ~ 3/28일 | | |
| 인천 - 베이징 | KE859/860 | '20.2/4일 ~ 3/28일 | | |
| | KE855/856 | '20.2/20일 ~ 3/28일 | | |
| 인천 - 상하이/푸둥 | KE895/896 | '20.2/7일 ~ 3/28일 | | |
| | KE893/894 | '20.2/18일 ~ 3/28일 | | |
| 인천 - 선전 | KE827/828 | '20.2/10일 ~ 3/28일 | | |
| 인천 - 선양 | KE833/834 | '20.2/11일 ~ 3/28일 | | |
| 인천 - 허페이 | KE813/814 | | | |
| 인천 - 항저우 | KE159/160 | | | |
| 인천 - 난징 | KE157/158 | | | |
| 인천 - 샤먼 | KE887/888 | '20.2/7, 9일 ~ 3/28일 | | |
| 인천 - 지난 | KE847/848 | '20.2/7, 11일 ~ 3/28일 | | |
| 인천 - 톈진 | KE805/806 | '20.2/7, 2/9일 ~ 3/28일 | | |
| 인천 - 웨이하이 | KE839/840 | '20.2/8, 11일 ~ 3/28일 | | |
| 인천 - 시안 | KE807/808 | '20.2/8, 11일 ~ 3/28일 | | |
| 인천 - 정저우 | KE809/810 | '20.2/8, 11일 ~ 3/28일 | | |
| 부산 - 상하이/푸둥 | KE875/876 | '20.2/4, 6, 8, 11일 ~ 3/28일 | | |
| 부산 - 칭다오 | KE889/890 | '20.2/4, 6, 8, 11일 ~ 3/28일 | | |
| 인천 - 다롄 | KE869/870 | '20.2/11일 ~ 3/28일 | | 감편 (주7회 → 주4회) 월,수,금,일 운항 |
| 인천 - 옌지 | KE891/892 | '20.2/11일 ~ 3/28일 | | 감편 (주7회 → 주4회) 화,목,토,일 운항 |
| 인천 - 광저우 | KE865/866 | '20.2/18일 ~ 3/28일 | | 감편 (주7회 → 주4회) 월,수,금,일 운항 |
| 인천 - 무단장 | KE823/824 | '20.2/20일 ~ 3/28일 | | 감편 (주5회 → 주3회) 화,금,일 운항 |

▶ 아시아나 “비운항 대상 노선(20.2.18 18:00 KST 기준)”

| 노선 | 편명 | 적용 기간 | 변경후 스케줄 | |
|--------------|--------------|-------------------------------|--------------------------|--------------|
| 동북아시아 | 인천 ↔ 홍콩 | OZ721/722 | 2월 19,23,25,27일 | 비운항 |
| | 인천 ↔ 타이중 | OZ7117/7127 | 2월 19,23일, 2월 26일~3월 15일 | 비운항 |
| | 인천 ↔ 가오슝 | OZ717/718 | 2월 16,17,19,21,23~25일 | 비운항 |
| | 인천 ↔ 타이베이 | OZ711/712 | 2월 21,22,24~26일 | 비운항 |
| | | OZ713/714 | 2월 23일 | 비운항 |
| | 인천 ↔ 후쿠오카 | OZ134/133 | 3월 3~5, 9~14, 16~17일 | 비운항 |
| | 인천 ↔ 오키나와 | OZ172/171 | 3월 4,17,18일 | 비운항 |
| | 인천 ↔ 미야자키 | OZ158/157 | 3월 4,11,18,25일 | 비운항 |
| | 인천 ↔ 베이징 | OZ331/332 | 2월 4일~3월 28일 | 비운항 |
| | | OZ335/336 | 2월 11일~3월 28일 | 비운항 |
| | 김포 ↔ 베이징 | OZ3355/3365 | 2월 6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톈진 | OZ327/328 | 2월 7일~2월 17일 | 주 3회 (화,목,토) |
| | | | 2월 18일~3월 28일 (2/29 운항) | 비운항 |
| | 인천 ↔ 상하이/푸둥 | OZ361/362 | 2월 4일~3월 28일 | 비운항 |
| | | OZ363/364 | 2월 13,18,20,22,25,27일 | 비운항 |
| | | OZ365/366 | 2월 14,15일, 2월 17일~3월 28일 | 비운항 |
| | | OZ367/368 | 2월 10일~3월 28일 | 비운항 |
| | 김포 ↔ 상하이/홍차오 | OZ3615/3625 | 2월 19,21,26일 | 비운항 |
| | 부산 ↔ 상하이/푸둥 | OZ311/312 | 2월 5일~2월 12일 | 주 2회 (목,일) |
| | | | 2월 13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난징 | OZ349/350 | 2월 12일~2월 29일 | 주 3회 (화,목,토) |
| 3월 1일~3월 28일 | | | 주 2회 (평,금) | |
| 인천 ↔ 항저우 | OZ359/360 | 2월 11일~2월 29일 (2/20 운항) | 주 4회 (일,수,금,일) | |
| | | 2월 19,21,24,26일, 3월 1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옌청 | OZ337/338 | 2월 13,18,20,25일 | 비운항 | |
| | OZ369/370 | 3월 1일~3월 28일 | 주 4회(평,목,토,일) | |

| | | | | |
|-------------|-----------|--|-----------------------------------|-----------------|
| 동북아시아 | 인천 ↔ 광저우 | OZ369/370 | 3월 1일~3월 28일 | 주 4회(월,목,토,일) |
| | | OZ355/356 (월,목,토) | 2월 12,13,14일, 2월 17일~3월 28일 | 비운항 |
| | | OZ357/358 (화,수,금,일) | | |
| | 부산 ↔ 광저우 | OZ305/306 | 2월 4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선전 | OZ371/372 | 2월 17일~2월 29일 (2월 15,19일 비운항) | 주 3회 (월,수,금) |
| | | | 3월 1일~3월 28일 | 비운항 |
| | | OZ3713/3723 | 2월 13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구이린 | OZ325/326 | 2월 1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청사 | OZ321/322 | 2월 3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하이커우 | OZ3535/3545 | 2월 2일~3월 1일 | 비운항 |
| | 인천 ↔ 충칭 | OZ353/354 | 2월 4,8,11일, 2월 15일 | 주 2회 (수,일) |
| | | | 2월 16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청두 | OZ323/324 (월,수,목,금,일) OZ3233/3243 (화,토) | 2월 15일~2월 29일 (2월 21일 비운항) | 주 3회 (수,금,일) |
| | | | 3월 1일~3월 28일 | 주 2회 (수,일) |
| | 인천 ↔ 시안 | OZ347/348 | 2월 11,13일, 2월 15~3월 28일 | 주 2회 (목,일) |
| | 인천 ↔ 칭다오 | OZ317/318 | 2월 14,17~19,21,23,24,26,28일 | 비운항 |
| | | | 3월 1일~3월 28일 | 주 4회 (월,수,금,토) |
| | | OZ319/320 | 2월 3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옌타이 | OZ307/308 | 2월 6,8,11일 2월 12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웨이하이 | OZ309/310 | 2월 13~29일 (운항일 : 2월 11,12,16,29일) | 비운항 |
| | | | 3월 1일~3월 28일 | 주 3회 (월,목,일) |
| | 인천 ↔ 창춘 | OZ303/304 | 2월 25일 | 비운항 |
| | | | 3월 2일~3월 28일 | 주 4회 (월,수,금,토) |
| | | OZ379/380 | 2월 7일~2월 18일 | 비운항 |
| | 인천 ↔ 옌지 | OZ351/352 | 2월 13일~2월 29일 (2월 22,24,29 비운항) | 주 5회(월,수,금,토,일) |
| | | | 3월 1일~3월 28일 | 주 4회 (월,수,금,일) |
| OZ3513/3523 | | 2월 10일~3월 28일 | 비운항 | |
| 부산 ↔ 선양 | OZ345/346 | 3월 4일~3월 28일 | 비운항 | |
| 인천 ↔ 다롄 | OZ301/302 | 2월 17일~3월 28일 (2월 14,18,22 비운항) | 주 4회 (화,목,토,일) | |
| 인천 ↔ 하얼빈 | OZ339/340 | 2월 14일~3월 28일 | 주 3회(화,목,토) | |

▶ 중국동방항공 “항공편 운항 변동 안내”

| 노선 | 공항 | 항공편명 | 탑승일 | 변동 내용 |
|---------|-----------|---------|--|--------|
| 김포 - 상해 | GMP - SHA | MU512 | 2020년 2월 3,4,5,6,7일 | 항공편 취소 |
| 김포 - 상해 | GMP - SHA | FM824 | 2020년 2월 10일 ~ 3월 28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상해 | ICN - PVG | FM828 | 2020년 2월 2,3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상해 | ICN - PVG | MU5052 | 2020년 2월 2,4,6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상해 | ICN - PVG | MU5042 | 2020년 2월 1,3,10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상해 | ICN - PVG | MU2070 | 2020년 2월 9,16,23일 3월 1,8,15,22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상해 | ICN - PVG | MU5072 | 2020년 2월 20~22, 24~29일 3월 2~7, 9~14, 16~21, 23~27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청도 | ICN - TAO | MU2040 | 2020년 2월 3, 11~15,17~22일, 24, 25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청도 | ICN - TAO | MU2044 | 2020년 2월 2,6,7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청도 | ICN - TAO | MU5022 | 2020년 2월 10,11,12,13,14,15, 16,19,20,22,23일 2월 24일 - 3월 28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청도 | ICN - TAO | MU71620 | 2020년 2월 23일, 3월 1,8,15,22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연대 | ICN - YNT | MU5050 | 2020년 2월 4,10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연대 | ICN - YNT | MU550 | 2020년 2월 5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위해 | ICN - WEH | MU2018 | 2020년 2월 7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연길 | ICN - YNJ | MU5068 | 2020년 2월 9,13,17일 | 항공편 취소 |
| 제주 - 상해 | CJU - PVG | MU5038 | 2020년 2월 2일 | 항공편 취소 |
| 제주 - 상해 | CJU - PVG | MU5060 | 2020년 2월 3,8일 | 항공편 취소 |
| 부산 - 상해 | PUS - PVG | MU5044 | 2020년 1월 31일/ 2월 2,4,10일 | 항공편 취소 |
| 부산 - 상해 | PUS - SHA | FM830 | 2020년 2월 10일 ~ 3월 28일 | 항공편 취소 |
| 대구 - 상해 | TAE - PVG | MU5054 | 2020년 2월 3,7,11,13,15,18,20,22,25,27,29일 3월 3,5,7,10,12,14,17,19,21,24,26,28일 | 항공편 취소 |
| 무안 - 상해 | MWX - PVG | MU5058 | 2020년 2월 1,12,15,19,22,26,29일 3월 4,7,11,14,18,21,25,28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남경 | ICN - NKG | MU580 | 2020년 2월 3,11,14일 | 항공편 취소 |
| 인천 - 무석 | ICN - WUX | MU2900 | 2020년 2월 17,19,23일 | 항공편 취소 |

● 상기 정보는 중국동방항공MU/상하이항공FM 한국공항 출발 노선 항공편 (한-중 노선) 및 30분 이상 사전 변경에 한해 제공됩니다. 상기 노선 이외에도 기타 항공편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정보는 참고 제공 자료이며,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국민께서는 이동 계획 전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항공편의 운항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다국어 상담전화 개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대응에 관한 상담과 협조를 칭다오에 있는 외국교민들한테 보다 더 편한 제공을 하기 위하여 칭다오시 외사관공실에서 오늘부터 영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24시간제 상담 전화를 개통합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 영어: 18661766530 15063928756
- 일본어: 18766270987
- 한국어: 18653281623
- 태국어: 13969800829
- 독일어: 15865522357
- 불어: 15318783591
- 러시아어: 15006482198
- 스페인어: 13791802219

칭다오시 외사관공실

2020년 2월 4일



<별첨 5> 칭다오시 방문인원(복귀인원) 건강관리 공지사항 안내

시민의 건강과 도시 공공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산둥성 중대돌발공공위생사건 1급 대응조치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칭다오시 코로나19 감염 폐렴 대응지휘부 판공실“은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칭다오에 방문하는(칭다오로 복귀하는) 모든 인원은 칭다오시 각 교통구안과 도로에 진입시, 반드시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하며, 건강상태정보등록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2. 칭다오에 방문하는(칭다오로 복귀하는) 모든 인원은 칭다오시에 진입한 후, 반드시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촌, 직장 혹은 호텔 등 거주지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매일 스스로 체온을 측정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필요 시, 반드시 규정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역학적 관련이 있는 인원(후베이성 등 코로나19 발생지역 여행력이나 거주자, 코로나19 발생지역 발열자나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자 포함)의 경우, 반드시 칭다오시로 방문하는(칭다오로 복귀하는) 날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의심환자 혹은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자는 반드시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받아야 한다.
4. 자가격리 관찰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거주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교차 감염을 피해야 한다. 관찰기간에는 반드시 1일 2회의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등록에 협조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요구에 따라 가까운 발열선별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5. 칭다오에 방문하는(칭다오로 복귀하는) 모든 인원은 발열, 무력감, 마른기침,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휴대폰에 “혜의(慧医)”APP 를 설치하고 앱 안의 “발열문진(发热问诊)”을 선택하거나 “건강칭다오(健康青島)” 위챗(wechat) 공식계정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외출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발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감염병 이력을 알려주고 검사와 등록에 협조해야 한다.
6. 칭다오에 방문하는(칭다오로 복귀하는) 모든 인원 중에 심리적 불편함이나 정서장애가 발생하여 스스로 심리조절이 어려울 경우, 칭다오시 24시간 심리상담지원 핫라인 0532-8566-9120에 연락하여 온라인 심리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첨 6>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절차상 제한조치(이민국 2.16)

| 연번 | 국가(지역) | 제한조치 |
|----|---------|---|
| 1 | 알바니아 | 티라나 국제공항 등 공·항만 입국 검역 강화 중국발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바로 격리조치 및 병원 이송 |
| 2 | 알제리 |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발 여행객 검역 강화 알제 국제공항 적외선 열감지 기기 설치 완료 |
| 3 | 아프가니스탄 | 모든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격리 조치 |
| 4 | 아르헨티나 | 주요 개항지에서 예방 검사 실시 |
| 5 | 아랍 에미리트 | 중국에서 오는 직항 항공편 이용 여행객에 대해 체온 측정 실시 2.5.부터 북경수도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행 허가, 중국내 다른 도시의 항공편 일시 중단 |
| 6 | 오만 | 2.2.부터 중-오간 항공편 운행 중단 2.10.부터 중국 및 기타 전염병 영향을 받은 지역의 입국자는 14일내에 위생부 지정 지역에서 전문적인 격리 관찰 조치. 중국발 여행객은 무스카트 국제공항 도착 후 건강 검사 실시 및 국제여행객 건강상태질문서와 건강보증서 등 서류 제출. 거주지가 있는 자는 무증상 확인 후 자가 격리, 거주지가 없는 자는 위생부 지정 지역에서 14일 격리 |
| 7 | 아제르바이잔 | 1.28.부터 바쿠국제공항은 입국자 체온 검사를 실시하며 체온 이상자는 의학 검사 실시 및 격리 조치 2.1.부터 일반여권 소지 중국인의 전자사증 및 바쿠국제공항의 도착사증 업무 일시 중단 |
| 8 | 이집트 | 중국 및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여행객은 입국 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필수. 검역부는 14일간 추적 감시 체온 38도 이상 또는 호흡 곤란, 기침 등 증상자는 모두 격리 관찰 |
| 9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공항 입국장에 체온 측정기 설치 완료 입국자 체온 측정 및 관련정보 기재(중국인 여행객 중점 검사) |
| 10 | 앙골라 | 2.4.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 |
| 11 | 앤티가 바부다 | 1.31.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 일시 입국 제한 |
| 12 | 호주 | 2.1.부터 2.22.까지 중국 대륙 출발 및 경유 입국 모든 외국인 14일 이내 입국 금지 호주 국민,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배우자, 법정후견인, 피부양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 13 | 파푸아뉴기니 | 1.29.부터 입국일 기준 3주 이내 호북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기타 여행객은 반드시 탑승 전 건강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14 | 바하마 | 1.30.부터 입국일 기준 20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출발 바하마 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반드시 14일간 격리 관찰 필요 |
| 15 | 파키스탄 | 공항에서 중국 출발 입국여행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실시하며, 체온 정상자는 14일 자가 격리, 체온 이상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관찰 |
| 16 | 바레인 | 바레인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자 체온 검사 실시 |

| | | |
|----|---------------|---|
| 17 | 파나마 | 중국 및 그 외 확진자 발생 국가발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전화 설문에 동의 필수 2.2.부터 중국,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발생 도시에서 입국한 자는 14일간 자가 의학 관찰 실시(감염의심 시, 강제 격리 조치) |
| 18 | 브라질 | 비행 중 혹은 이륙 시 기침,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여행객은 즉시 공항에서 의료도움을 받고 여행 출발지에 이를 통지 |
| 19 | 벨라루스 | 위생방역부는 공항변방, 해관 등 부문 관리감독 강화 발열자 검색, 입국자 중 감염 증상 발견 시 격리 조치 |
| 20 | 불가리아 | 주요 공·항만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및 중국 또는 그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은 전면 검역 실시 - 고열 및 기타 증세 발견 시 관련 요원이 즉시 소피아군사의학과학원 혹은 바르나시, 부르가스시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가발 여행객이나 이상 증세 미발견 시 자가 격리 실시(14일간 의사의 추적 관찰 진행 예정) |
| 21 |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 | 1.29.부터 30일 이내, 중국 대륙 출발 모든 여객(국적, 직항, 환승 불문) 입국 일시 중단 |
| 22 | 북마케도니아 | 중국에서 출발하여 이스탄불과 두바이 경유 후 스코플레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
| 23 | 아이슬란드 | 케플라비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호흡기 감염 여부 신고 필수 최근 14일 내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혹은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자는 진찰 필요 시 관련 의료요원이 조치 예정 |
| 24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검역 강화 국경 경찰은 중국발 여행객의 체류지,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수집하여 민정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텝스카 공화국 위생부에게 통보 |
| 25 | 폴란드 | 중국발 직항 항공편 이용 바르샤바쇼팽 국제공항 입국자는 질문서 작성 및 제출(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기입 필수) 이상 증세 발견 시, 해당자는 추가 검사 진행 |
| 26 | 부룬디 | 모든 입국자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중국발 입국자는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즉시 부줌부라 프린스병원으로 이송되어 14일간 격리 관찰 |
| 27 | 북한 |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북한인을 포함한 모든 최근 입국자에 대한 30일 격리관찰 실시 |
| 28 | 적도기니 | 국적 불문 중국발 모든 입국자는 14일 격리. 격리기간 경과 후 무증상자는 격리 해제 |
| 29 | 독일 | 입국 여행객 체온 검사 실시 |
| 30 | 동티모르 | 2.5.부터 과거 4주 내에 중국 호북성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과거 4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시, 이민국에 인증된 병원 발급 건강보고서를 제출하여 무감염을 증명해야 함 |
| 31 | 도미니카 공화국 | 2.6.부터 중국에서 탑승하고 목적지가 도미니카인 모든 여행객(국적 불문)은 수도에 위치한 산토도밍고의 미주국제공항과 동북 여행 도시 평타카나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만 입국 |

| | | |
|----|------------------|--|
| | | 크루즈 회사는 반드시 위생부에 과거 14일 내 중국 방문 여행객의 정보 보고 이민변방부는 반드시 모든 여행객에게 과거 30일 내 중국 방문 이력을 질문하고 14일 내 중국 방문 여행객 확인 시, 해당 항구 방역기관에서 건강 검진 실시 |
| 32 | 러시아 | 중국인 취업사증 및 관광전자사증 일시 중단. 중국인 단체여행 무사증 일시 중단 중-러간 모든 변경 항만 일시 폐쇄. 중국인의 몽골 경유 러시아 입국 금지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등 국제공항은 입국자 체온 측정, 동시에 프리모 르스키 지방의 각 변방검문소는 모든 입국자 위생검역 및 체온 측정 강화, 이상 증상 발견되는 경우 격리 조치 모스크바공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발 항공편만 입국 허가 제3국 경유 블라디보스톡공항 입국 중국인은 여권 및 비자와 상관없이 배 치된 임시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 관찰 |
| 33 | 에콰도르 | 1.23.부터 키토, 과야킬 국제공항과 콜롬비아 경계의 루미차카 국제국경검 문소 및 항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공공위생 관련 방역 모니터 링 강화 발열 및 호흡 관련 이상증세 발견 시, 전문 의료진이 심층 검사 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증세 발견 시, 병원에서 심층 검사 진행 - 전국 공공위생연구기관의 재가에 따라 입국 가능여부 결정 |
| 34 | 에리트리아 | 1.30.부터 수도 아스마라 국제공항은 모든 입국 여행객에 대한 적외선 체온 측 정 진행 중국발 입국자는 체온 측정은 물론 반드시 여행경로 보고 및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관찰 |
| 35 | 프랑스 | 공항에서 발열 등 이상증세 발견 즉시 해당자 격리 조치 |
| 36 | 필리핀 |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발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금지(필리핀인과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영주권자 소지자 제외. 단,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 37 | 피지 | 2.2.부터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대륙 방문자 입국 및 경유 금지 (피지 국민 제외) 해제일 추후 통지 |
| 38 | 콩고 (브라자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 14일 격리 격리 장소는 수도인 브라자빌 교외의 금덕열혈화호텔 |
| 39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 주요 공·항만에 검문소 설치 및 위생관리원 배치하여 심층 검사 진행 중국발 여행객 중, 1차 진단에서 감염의심 발견 시 격리 조치 |
| 40 | 콜롬비아 | 모든 공·항만에 세관/검역 강화 지속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 업데이트 및 사태가 심각할 경우 대응방안 강구 |
| 41 | 그레나다 | 2.2.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 42 | 그루지야 | 위생질병관리기관에서는 각 공항에서 체온 측정 실시 - 관련요원이 중국발 및 중국 여행객이 탑승한 항공편 이용 승객 모두 발열 여부 확인, 출발지, 방문도시, 등 추가 질문이 있을 예정 - 이상증세 발견 시 전문의료기관의 심층 검사 권장 |
| 43 | 쿠바 | 모든 공·항만에서는 입국 여행객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심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후 격리관찰 및 치료 위생질병관리부에서 해당 여행객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 | | |
|----|--------|---|
| 44 | 카자흐스탄 | 7.1.까지 중국인 72시간 환승 무사증 정책 이행 일시 중단 신장 호얼귀스 국경지대협력센터의 카자흐스탄측 업무 일시 중단 카자흐스탄-중국대륙의 육해공 여객운수 업무 일시 중단 중국인 사증 발급 일시 중단.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거주지에 따라 의료 추적과 관리 감독 실행 |
| 45 | 한국 | 2.4.부터 중국 호북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및 과거 14일내 중국 호북성 방문·체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2.5.부터 중국인 환승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 홍콩, 마카오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모든 여객은 공항 도착 후 반드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및 체온검사 실시 |
| 46 | 몬테네그로 | 1. 아래 4부류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건강질문 실시 - 중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과 접촉한 여행객, 최근 14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감염 치료받은 여행객 및 최근 14일 이내 가금류 판매시장에 방문한 여행객 2. 위생관리검역원이 위 4부류의 여행객을 포함한 입국자에게 건강조사 진행 및 건강 모니터링 관련 안내문 교부 |
| 47 | 온두라스 | 2.8.부터 14일 이내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국가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
| 48 | 지부티 | 지부티 내 모든 공·항만, 기차역과 그 외 육로국경지대에서 입국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역 실시(특히 중국발 입국 여행객은 심층 검역 진행). 이상체온 감지 혹은 감염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지정 병원에서 관련 의료진의 격리관찰 및 치료 진행 |
| 49 | 키르기즈스탄 | 2.1.부터 중-기간 국경지대항구 임시 폐쇄. 양국 간의 항공편 운영 일시 중단. 중국인 사증 발급 일시 중단 2.4.부터 위생방역부는 전염병 발생 국가 입국자의 체온 및 기관지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전, 입국자는 격리구역에서 대기(의학검사 예상 2-3일 소요) |
| 50 | 기니 | 공·항만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
| 51 | 캐나다 |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알림을 풋말, 전광판, 전자입국신고서를 통해 상기 시킬 예정 - 감염의심 증세 발견 혹은 호북성 방문자는 입국 심사관에게 자진 신고 필수 - 세관/검역관리자가 심층 검사 진행하여 필요시 병원 이송조치 위생부는 과거 14일 내 호북성 방문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24시간 내 현지 공공위생부에 보고토록 요구함. 중국 대륙발 국제 여행객은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긴밀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인원 밀집 장소 방문이나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함 |
| 52 | 가나 | 모든 입국 공·항만에서 검역 모니터링 강화 - 건강상태질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인터뷰 진행 - 중국발 여행객은 심층 검역 및 추가 검사 진행 |
| 53 | 가봉 | 2.7.부터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

| | | |
|----|--------|---|
| 54 | 체코 | 1.30.부터 중국인의 사증 신청 접수 및 발급 중단 |
| 55 | 짐바브웨 | 입국 공·항만에서 방역 소독 실시 중국발 입국자에 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 지역에서 출국한 자는 별도의 의학적 관찰 추적 진행 |
| 56 | 카타르 | 중국 대륙 출발 여행객이 뉴도하 국제공항에 입국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심층 조사 예정(필요시 격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입국자에게 허가보장서 요구(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보장 내용 포함) |
| 57 | 코모로 | 수도 모로니공항에서는 모든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
| 58 | 코트디부아르 | 공·항만, 육로국경지대의 위생검역 강화 |
| 59 | 쿠웨이트 | 중국 여권 및 홍콩 여권 소지자, 최근 2주 이내 중국대륙 및 홍콩 입국 또는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
| 60 | 크로아티아 | 각 입국 항구는 14일 내 중국 대륙 방문 여행객 체온 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등 입국자 의료 검사 강화. 발열, 호흡 곤란 등 이상자는 전문적인 검사 후 격리 조치 여부 판단 |
| 61 | 케냐 | 모든 공·항만에서는 중국 출발 여행객에 한해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점검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격리 관찰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조치 예정 |
| 62 | 레소토 | 모든 입국자 체온 검사 실시 및 거주지 등기. 체온 37.5도 이하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위생부에서 집에 방문하여 검사하며 14일내 이상증상 발견 시 전문적인 지정 장소에서 격리 치료. 입국 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는 전문 지정 장소에서 격리 치료 |
| 63 | 라오스 | 2.2.부터 모딩(보텐)항구 중국 여행객의 도착사증 제도 일시 중단 주중라오스대사관 중국 출국 외국인의 여행비자 발급 일시 중단 |
| 64 | 레바논 | 모든 공·항만, 육로국경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대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 열감지 모니터링 기기 설치 완료 중국발 여행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중국을 왕래하는 여행객에 한해서 방역 관련 안내문 교부 14일 자가 격리 및 연락 유지, 중국발 여행객 14일 내 이상 증상 발견 시, 라피크 하리리 대학병원에서 검사 진행, 필요시 병원에서 격치 관찰 |
| 65 | 리투아니아 | 모든 공·항만에서 체온 측정 등 방역 조치 시행 바이러스 감염자, 감염의심자 등의 입국을 엄중히 방지할 예정 |
| 66 | 라이베리아 | 2.2.부터 중국 출발 여행객은 14일간의 의학적 격리 관찰 조치 |
| 67 | 마다가스카르 | 중국 출발 또는 경유한 모든 여행객은 마다가스카르 입국 후 반드시 탑승한 항공사의 책임 하에 격리 관찰(항공사는 격리환자 탑승한 좌석 착석 금지 권장) 공·항만은 여행객 및 승무원 체온검사와 여행질문서 제출 등 검역 강화.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의 여행경로 파악 |
| 68 | 몰디브 | 1.31.부터 중-몰간 모든 직항 항공편 일시 중단 2.3.부터 입국 14일 내 중국 대륙 방문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
| 69 | 말라위 | 모든 공·항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가 국민에 대한 심층 검역 진행 감염의심자는 격리 조치 |

| | | |
|----|-------|--|
| 70 | 말레이시아 | <p>1. 호북 지역 중국인 입국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발급지와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고, 만일 사증 발급지가 호북성이거나, 1개월 이내 호북성 방문 기록이 있거나, 항공기 출발지가 호북성인 경우 입국금지 <p>2. 모든 말레이시아 방문 외국인 여행객 체온 측정. 입국이 거절된 여행객은 탑승한 항공사의 마련에 따라 송환 처리</p> <p>3. 상기 입국 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생지가 호북인 경우, 이민국은 심층 인터뷰와 항공편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입국 허가하며, 여행객은 최근 2-3개월의 여행일정 정보 및 왕복비행기 일정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p> <p>4. 현재 조호르주 바르공항은 중국 국민 대상 잠정 폐쇄. 따라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려는 말레이시아 체류 중국 국민에게 항공편 변경을 권하며 바르공항 및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 가능</p> <p>5. 2.8.부터 사바주는 14일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 출발·또는 경유 여행객은 사바주로 입국 불가. 단, 사바주 영주자격자, 취업증·학생증·장기방문허가 등 장기허가증 소유자가 과거 14일내에 중국 방문 시, 강제 자가격리·관찰 14일 실시. 사바주 정부는 현재 사바주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 대상, 1회 최대 7일의 비자 연장 가능</p> <p>6. 사라와크주는 중국인 및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해제일 추후 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유학, 장기거주허가사증 소지 외국인 제외(단, 14일 강제 자가 격리 실시) |
| 71 | 말리 | <p>바마코국제공항, 1.27.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강화 및 손소독 강제 실시. 체온 37도 이상자, 강제 격리 실시</p> |
| 72 | 마셜제도 | <p>2.2.부터 3.2.까지 30일 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p> |
| 73 | 모리셔스 | <p>2.2.부터 중국 거주자 혹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의 경유 및 입국 금지. 모리셔스 거주자 (배우자 및 자녀 포함)는 14일내 중국을 방문했다라도 입국을 허용하나, 격리관찰 필수</p> |
| 74 | 모리타니아 | <p>2.3.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자(외국인 포함)는 지정된 곳에서 14일간 강제 격리 관찰 조치</p> |
| 75 | 미국 | <p>미국 동북부 기준 2.2. 오후 5시부터, 과거 14일 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미국인과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제외) 일시 입국 금지</p> <p>중국발 여행객 혹은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뉴욕JFK, 시카고ORD, 샌프란시스코SFO, 시애틀SEA, 호놀룰루HNL, 로스앤젤레스LAX, 애틀랜타ATL, 워싱턴IAD 등 8개 공항에 착륙.</p> <p>2.3.부터 뉴저지주EWR, 델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등 공항에 추가 착륙 가능</p> <p>주중미국대사관 공식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2.10.부터 주중대사관 및 주청두·광저우·상하이·심양 총영사관의 비자 업무 일시 중단</p> |
| 76 | 몽골 | <p>2.1.부터 3.2.까지 중국인 및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일시 금지.</p> <p>화물차량과 기사는 다커스컨-불간, 처커-시보어쿠룬, 간치마오두-가순수하이투, 만두라-항지, 얼렌하오터-자민우드, 주은가다부치-비치거투, 어부투거-비엔후슈국도를 통해 입국 가능</p> <p>기입국한 중국인의 귀국은 제한받지 않으며 항공 및 철로를 통해 출국 가능</p> |

| | | |
|----|-----------|---|
| 77 | 방글라데시 | 2.2.부터 중국인 도착사증 제도 일시 중단하며, 입국 전 사증발급 필요 다카국제공항 등 스캐너 설치, 입국시 《공공위생등기표》와 《건강신고서》 작성 |
| 78 | 미크로네시아 | 1.6.이후 모든 중국 대륙 출발 또는 경유한 자 일시 입국 금지. 기타 입국자는 “무증상건강증명서” 제시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 가능 |
| 79 | 미얀마 | 2.1.부터 중국인 도착사증 정책 일시 중단.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국제공항 등 다수 공항, 우한발·경유 여행객 대상 검역 강화 |
| 80 | 모로코 | 주요공항 적외선 체온측정기 설치,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
| 81 | 모잠비크 | 입국자 체온 측정, 여행 일정 확인,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및 체온 이상자 격리 등의 조치. 중국발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 격리 |
| 82 | 멕시코 | 북부 변경 항구 및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칸쿤과 과달라하라 등 국제 공항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발 항공편 승객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 증상은 중점 검사 |
| 83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입국 시 체온 측정 등 검역 활동 실시 중국 및 기타 감염증 발생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 |
| 84 | 남수단 | 2.1.부터 입국자 대상 건강상태 신고 제도 실시. 입국 14일 전 바이러스 영향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한 자는 공항의 별도 사무실에서 건강상태확인 및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주바 국제공항 등은 적외선 체온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상 체온자 대상 별도 검역 절차 진행 |
| 85 | 네팔 |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체온측정기 추가 설치. 국제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실시. 발열, 호흡기 이상 증상은 즉시 지정병원으로 호송 |
| 86 | 니카라과 | 마나과 수도공항을 포함하여 Madriz, Nueva Segovia, Rivas, Chinandega, Rio San Juan 각 성의 개항지 검역 제도 강화 |
| 87 | 니제르 | 국제공항,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측정 등 조치를 통해 검역활동 강화. 중국인 포함 중국 여행 경력 있는 모든 여행자에 해당 |
| 88 | 나이지리아 | 국제공항 등 개항지는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실시 |
| 89 | 팔라우 | 2.1.부터 3.31.까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발 직항 항공편 일시 중단 3.31.까지 최근 14일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출발 및 경유자 입국금지 (팔라우 국민과 영주권자 제외) 입국 시 전면적인 건강 검사 실시 및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 |
| 90 | 일본 | 2.13.부터 입국신청일 전 14일 내 회복성과 절강성 방문 외국인 및 회복성, 절강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금지 |
| 91 | 엘살바도르 | 1.30.부터 최근 중국 방문한 모든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 |
| 92 | 사모아 | 입국 시 특별건강성명서 작성 및 체류국가에서 사모아로 출국하기 3일 전에 병원에서 발급한 무감염 증명 및 여행허가확인서 제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국가 출발 여행객,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간 체류 사실 입증 및 신체검사 증명 필요. 불가시 송환조치 |

| | | |
|-----|-----------|--|
| 93 | 세르비아 | 변방 검역 강화 베오그라드, 니시 공항 및 육로 변방출입경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입국자 체온 확인 의심증상 확인 즉시 격리·병원 호송 조치 |
| 94 | 시에라리온 | 모든 입국자에 대한 체온 측정 및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한 후 14일 내 중국 여행 이력자(의심 증상 유무 불문) 14일 집중 격리 |
| 95 | 키프로스 | 중국인 및 최근 중국 방문 외국 대상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확인. 관련 대책은 중국인 포함 중국 여행 경력 있는 모든 입국자에 해당 |
| 96 | 세이셸 | 2.3.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및 환승 불가 |
| 97 | 상투메 프린시페 | 입국자 대상 체온측정 및 검역 조치 |
| 98 | 스리랑카 | 스리랑카 방문 중국인, 온라인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서(ETA) 신청 필요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은 중국인 도착사증 신청 중단 모든 항공사는 반드시 중국인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서 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체크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필요 |
| 99 | 수리남 | 2.5.부터 과거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항공사 직원 및 탑승객 포함). 단, 수리남 상주 거주자는 제외 2.6.부터 개항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 조치 강화. 위험지역발 여행객, 관련 증상 확인시 14일 격리 조치. 위험지역발 여행객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격리 권고 |
| 100 | 솔로몬 제도 | 2.3.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발 여행객은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경유 금지 호주 브리즈번 출발 여행객은 입국 전 엄격한 검사 실시 |
| 101 | 타지키스탄 | 2.1.부터 두산베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 및 중국인은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4일 격리 조치. 2.3부터 모든 중-타 항공편 잠정 중단 |
| 102 | 태국 | 수완나품, 돈므앙, 치앙마이, 푸켓 등 공항 적외선 체온 측정기 추가 설치 중국발 여행객 대상 조사 강화(우한발 여행객 검역 특별 강화)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사 감염 증상자, 격리·치료 |
| 103 | 탄자니아 | 국제선 여행객, 공항 검역 및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의심증상 발견시 격리 센터 호송 후 진료 |
| 104 | 통가 | TF팀, 통가타푸섬국제공항 배치. 여행자 대상 건강상태확인 조치. |
| 105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중국발 혹은 중국 경유 여행객(국적 불문)은 중국에서 출국 14일 이후 입국 가능 |
| 106 | 터키 | 이스탄불 공항, 중국발 입국자 대상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실시 의심 증상자는 위생감독센터의 공공위생응급예방책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전용 구급차로 지정병원으로 호송 터키에 근무하는 중국 발 중국인 입국자는 14일간 휴가로 간주한 격리 조치. 상기 입국자는 현지 위생부에 연락처 제공, 의료기관의 추적 검사 및 위생부의 허가 후 근무 가능 |
| 107 | 투르크메니스탄 | 중국발 여행객 대상 체온 측정 등 검역 활동 강화 관련 증상 발견 시 격리 관찰, 병원 호송 |

| | | |
|-----|--------|---|
| | | 수도 아슈하바트 국제공항은 기존의 적외선 체온 측정 외에도 공항 의료인력이 최근 28개 전염병 보고 국가 혹은 지역 여행자에 대한 일차 검사 후, 아슈하바트시 전염병병원의 전면적인 검사 및 2-7일 의학관찰 등 검역조치 강화 |
| 108 | 바누아투 | 1.31.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출발 여행객은 모두 '개인건강증명서' 필수 제출. 동 증명서 발급일자는 중국 출발 14일 이후부터 30일 사이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불허 |
| 109 | 과테말라 | 1.31.부터 최근 15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
| 110 | 베네수엘라 | 항구에서는 감염증 검사 및 입국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등기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격리 기간 동안 방역부는 지속적으로 유선 관찰 실시 |
| 111 | 브루나이 | 모든 입국 항구에서는 이미 체온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 브루나이인과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호복성, 절강성, 장수성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 일시 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내 호복성, 절강성, 장수성 이외 기타 중국 지역을 방문한 장기비자(취업비자, 전문가비자 등) 소유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
| 112 | 우간다 | 입국 시 건강상태확인 및 체온 측정 실시 중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관찰 14일 권고 |
| 113 | 우크라이나 | 관련 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입국 전 충분한 방역 검사 실시, 모든 입국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 114 | 우루과이 | 관련 예방책 및 응급안 배정 완료. 입국 상황 예의 주시 중 |
| 115 | 우즈베키스탄 | 2.1.부터 중-우간 항공편 전면 운항 중단 |
| 116 | 그리스 | 공항에 체온 측정기 설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조치 강화 |
| 117 | 싱가폴 | 중국 대륙 출발 입국자는 국적 불문 입국 및 경유 금지. 중국 대륙 이외의 국가 혹은 지역 출발 및 14일 내 중국 대륙 방문 경력 없는 중국인 입국자는 단순 환승은 가능하나, 입국은 금지. 영주권과 장기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14일 휴가 신청. 중국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모든 종류의 사증 발급 일시 중단 단수/복수/환승 사증 기발급자 일시 사용금지, 해당기간 동 사증으로 입국 금지 상기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사유로 입국이 불가피할시, 싱가포르 이민국에 신청 (인력부 통지) 2.7.부터 과거 14일 내 중국 대륙 방문 이력이 있고 2.8. 23시 59분 후에 귀국하려는 외국인 취업자(IPA 소지자)는 3일 전 인력부에 신청하여 허가 후 입국. 과거 14일내 중국 호복성 방문 또는 호복성 발급 여권 소지 취업자에 대한 일시 입국 금지(인력부의 추가 통지 대기) |
| 118 | 뉴질랜드 | 2.2. 이후 중국 내륙(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 출발 또는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다만 뉴질랜드 국민, 유효한 영주비자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직계가족(유효한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받은 배우자, 법적 후견인 및 24세 이하 부양 자녀)은 제외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현 시행중인 입국제한 정책은 2.24.까지 연장 |
| 119 | 자메이카 | 1.31.부터 모든 중국 출발 입국자는 최소 14일간의 격리관찰 실시 중국 출발 자메이카인은 감염증상 발견 즉시 병원 이송되어 격리치료 진행 |

| | | |
|-----|------------|--|
| 120 | 아르메니아 | 2.1.부터 3.31.까지 중-아 무비자 입국 제도 일시 중단 입국 전 아르메니아 외교기관 혹은 온라인 전자사증시스템에서 사증 신청 요망 외교, 공무여권 소지 중국인은 무사증 입국 유지, 중국인 도착비자 일시 중단 |
| 121 | 이라크 | 이라크 내 모든 공·항만에서 30일간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및 1.14. 이후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에 대하여 2.1.부터 쿠르드 지역 공·항만을 통한 입국 금지 쿠르드지역은 30일간 중국인 전자사증 접수 일시 중단 |
| 122 | 이란 | 중-이란 직항 항공 노선 일시 중단(단, 제3국에서 환승하는 항공편은 가능) |
| 123 | 이스라엘 | 2.3.부터 중-이란 상업 항공편 일시 중단(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일 기준 2주 이내 중국 방문한 이스라엘 영주권자는 재공지 전까지 모든 육·해로를 통한 입국 금지 |
| 124 | 이탈리아 | 국가 긴급상황 선포, 중-이란 직항 노선 항공편 일시 중단 2.7.부터 일부 상업항공편 운영 |
| 125 | 인도 | 1.31.부터 네팔 밀접 5개 변방부대는 호북성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검사 실시. 찰나이공항은 우한시 입국자 혈액 검사 및 28일간 검역, 중국 다른 지역 입국자는 28일간 검역, 동남아 지역 입국자는 독감 검사 실시 2.2부터 중국 여권 소지자 및 중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잠정 중단(기존 발급 전자사증도 무효 처리). 인도 방문이 불가피한 자는 주중국 인도대사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재신청 |
| 126 | 인도네시아 | 2.5.부터 중국 여권 소지자 및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의 환승 및 입국 금지 중국인 도착사증 및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 |
| 127 | 영국 | 지정된 공항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우한발 직항 항공편 이용자에 대한 검역 강화,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 |
| 128 | 요르단 | 2.2.부터 중국 출국 후 2주 이내의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 129 | 베트남 |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의 여행, 취업, 사업, 유학, 친지방문 등 목적(즉, DL, LD, DN, DH, VR 종류의 비자)의 입국을 지속적으로 제한. 단, 외교, 공무 목적의 입국자는 항구의 의료 검사를 거쳐 입국 조건에 부합한 경우 입국 가능 중국인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출발하고 14일 내 중국 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 입국 가능 항공국 통지에 따르면, 국가항공공사는 2월 15일 6개 임시 항공편을 개통하여 베트남에 체류 중인 중국인의 귀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함 |
| 130 | 잠비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자는 모든 공·항만 입국장에서 체온측정 및 관련 심문 예정 |
| 131 | 차드 | 은자메나 국제공항은 모든 여행객 대상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실시 우한발 모든 여행객은 차드 입국 후 14일간 의학적 관찰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 |
| 132 | 칠레 | 산티아고 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국가 방문자에 한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감염의심 시 격리 검사 진행) |
| 133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방기 국제공항에서는 모든 여행객에 대하여 열 감지 모니터링 실시(이상이 있을 경우 격리조치) |